

윤 리 강 령

전 문

우리 회사는 혁신적이고 열정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세계 기업시민으로 성장한다는 씨에스윈드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

우리 회사는 그러한 성장을 함에 있어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경영활동과 관련한 모든 법규, 시장질서,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가치와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존중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국가 및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한 기업문화와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적극 실천한다.

제1절 총 칙

1 적용범위 및 시행

- 가) 본 윤리강령은 씨에스윈드 주식회사를 비롯한 모든 자회사 및 계열회사와 그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모두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이다.
- 나) 씨에스윈드 주식회사, 그 자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다)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강령 준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윤리강령의 시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등의 자문을 요청하여 윤리강령을 적용할 수 있다.
- 라) 회사는 윤리강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별도의 윤리강령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윤리강령 위반 제보 및 제보자 보호

- 가) 윤리강령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윤리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를 강요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감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나)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는 본 윤리강령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법위반행위, 부정부패행위 발견 시 이를 감사위원회가 권장하는 제보 절차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며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금지한다.

3 윤리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 가) 본 윤리강령의 위반은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회사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고, 징계의 결과는 전사 공지를 통하여 그 경각심을 일깨운다.
- 나) 금품수수, 향응제공 및 수령, 횡령, 정보조작 및 성관련 비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해고하고, 회사는 퇴직 후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 다) 다음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한 징계/처벌을 한다.
 - ①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윤리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 ② 윤리강령의 위반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
 - ③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④ 윤리강령 위반을 신고한 임직원에게 대한 보복행위
- 라)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교육, 제도적 정비 등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절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존중과 책임

4 사회공헌

- 가) 회사는 기술의 개발, 세금납부, 이익 및 고용의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각국의 사회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 나) 회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봉사, 재난구호, 복지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문,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후원하여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

5 환경경영

- 가) 회사는 경영활동에 수반하는 자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금 보다 더 나은 자연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자연보호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 나) 회사는 국내외적으로 합의된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 다) 회사는 화석연료 및 이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의 사용량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친환경경영을 한다.

제3절 준법경영

6 준법경영

- 가) 회사는 국가 및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 및 정책을 존중하고 준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거래질서를 위하여 조약, 협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 나) 회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존중 및 지지하고, 명확한 인권보호 정책과 체계를 확립하며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다) 회사는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하는 행위 및 자금세탁을 자행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 라) 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재산권 및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여 거래를 하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7 바른경영

- 가) 회사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정직한 방법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올바른 경영을 한다.
- 나) 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여 거래를 하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다) 고객사, 경쟁사 등 기업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4절 이해관계자 존중

8 주주 및 투자자 존중

- 가) 회사는 주주 및 투자자의 지속가능한 이익실현 및 권리보호에 있어 윤리 경영이 그 근본임을 인식하고 모든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나) 회사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고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다) 회사는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회계정보를 포함한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한다.

9 고객사 존중

- 가) 회사는 고객사 또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의 동반자임을 명심하고 고객사로 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고객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한다.
- 나) 회사는 비윤리적 기업활동이나 불법적인 행위로 고객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사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고객사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다) 회사는 고객사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고객사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10 협력사 존중

- 가) 회사는 건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력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거래 조건을 보장하여 장기적이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 나) 회사는 협력사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판매지역 제한, 경쟁업체에 대한 판매 거절 강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부당한 지원 또는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다) 회사 및 임직원은 협력사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 또는 청탁을 받거나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을 우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고가 구매, 물량 몰아주기,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 라) 임직원은 협력사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 마) 회사는 협력사를 선정함에 있어 회사가 추구하는 인권, 윤리, 환경,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고려한다.

11 경쟁사 존중

- 가) 회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그 원칙에 따라 시장에 참가하며 경쟁사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성장한다.
- 나) 회사는 국내 및 국외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경쟁에서 이기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경제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다) 임직원은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경쟁회사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수령하거나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또는 공유하는 대가로 경쟁회사의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절 임직원에 대한 존중과 책임

12 임직원에 대한 존중

- 가) 회사는 회사를 구성하는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임직원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임을 인식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인재육성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 나)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기반하여 채용을 하고 그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다)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민족, 국적, 종교, 학력, 장애, 결혼 및 임신 여부, 나이, 혈연, 신분, 정치적 견해 및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13 건강한 조직문화 육성

- 가) 회사는 임직원 모두가 정신과 육체 모두 건강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나)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율과 창의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과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모든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제6절 임직원의 윤리의무

14 기본윤리

- 가)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자율과 창의에 기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윤리강령을 포함한 회사 규정과 업무와 관련한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다) 임직원은 주어진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고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15 이해상충 행위 금지

- 가) 임직원은 회사 내 지위 또는 비공개정보를 활용하여 회사나 회사의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하거나 그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이득도 취하여서는 안된다.
- 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를 활용하여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보고하고 그러한 상황을 해소하여야 한다.

16 회사 자산의 부정 사용금지

- 가) 임직원은 회사가 보유한 정보/자료 및 업무상 취득 또는 지득한 회사와 관련한 정보/자료는 회사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유출할 수 없다.

- 나)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주식거래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다) 임직원은 회사의 유형 및 무형자산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지정된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라) 임직원은 회의비, 업무추진비, 출장관련비용 등 회사의 예산을 사적인 용도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7 건전한 동료 관계

- 가) 임직원은 그 의도와 상대방을 불문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을 하거나 물건이나 자료를 소지하여서는 안되며, 회사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함에 동의한다.
- 나) 임직원은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하는 부당한 지시, 비난, 폭력, 괴롭힘, 따돌림 등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 다)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으며, 지위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라) 임직원은 각 구성원의 인격과 업무 영역을 존중하고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8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가)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물적, 인적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나) 임직원 개개인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존중되나, 임직원은 정치적 견해가 다름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정치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19 금품 등 수수 금지

- 가) 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사 등 회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수령, 요구, 약속하지 않는다.
- 나) 임직원은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회사가 정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수준의 금품,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다)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않는다.
- 라)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20 재무관련 직무수행의 엄격성

- 가)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을 포함한 경영진, 재무, 회계, 자금, 세무, 공시 및 투자업무 관련 담당자(이하 '재무관련 임직원'이라 한다)는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최고 수준의 정직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재무관련 임직원은 국내외 관계 법령, 감독기관의 감독규정 및 회계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준수하여 투명한 회계처리를 한다.
- 다) 재무관련 임직원은 정부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외부에 공표하는 자료 등을 원칙에 따라 정확, 완전하게 작성하고, 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 라) 재무관련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윤리강령 및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즉시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문의 후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